#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7

발의연월일: 2021. 7. 21.

발 의 자:이만희·윤한홍·김석기

김선교 • 박덕흠 • 이명수

김태흠 • 이 용 • 이양수

권명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농·어촌을 기반으로 한 지방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하여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2019년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등 인구감소로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마련하고, 주거·교통 ·의료·교육 및 농림·수산업 생산기반 육성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지역의 활력 증진과 정주인구 확보 등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함(안 제6조).
- 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함(안 제8조).
- 라.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 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1조).
- 바.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
- 사.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지정, 주택공급 및 토지 수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서의 농림·수산업의 생산 기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자.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사업의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활력을 증진함으로써 정주인구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이란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2. "경제활동인구"란 16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역 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 3. "청년"이란 16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 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경제활동인구의 적정한 배치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지원목적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2장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
- 2. 지방소멸위기지역 인구 유입 촉진 및 유출 억제에 관한 사항
- 3. 지방소멸위기지역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4. 지방소멸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지방소멸위기 대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지방소 멸위기지역 활성화에 대한 계획안(이하 "시·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및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7항 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행정안전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시 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제출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소멸위기 및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기획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활성화기획단(이하 이 조 에서 "기획단"이라 하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해제와 관리

- 제11조(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할 때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구감소율
  - 2. 연령대별 인구 구조
  - 3. 재정 여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달리 할수 있다.
  - 지방소멸위험지역: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악화되어 지역의 존립
     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된 지역

- 2. 지방소멸우려지역: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제1호 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 1.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
- 2.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지원금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지역
-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거나 할 필 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조사단을 조직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한 각 호의 지역을 변경지정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지정,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 제12조(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군수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지역 내에 활성화지원구역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활성화지원구역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청년의 창업 지원 및 창업 환경 조성
  - 2. 농림 수산업 활성화 및 귀촌 귀농인 등 지원
  - 3.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방안
  - 4.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 일자리 지원) ①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시장·군수는 청년 일자리 확충으로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임금 지원 사업
- 2.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 또는 창업 비용 지원 사업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 설치) ①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 ② 지역이주 · 교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 2. 지역 간 주민 교류 지원
  - 3. 경제활동인구의 이주 촉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주민 지원 및 지역 간 주민 교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 ③ 지역이주·교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미분양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산업단지개 발계획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산업단 지로 지정되었을 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17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주택법」 제5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주택의 공급기 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는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 제19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청의 장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지방소멸위기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 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 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 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 또는 매각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농림·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서의 농림·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

- 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중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2조(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이하 "교육·문화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교육·문화시설을 설치하거나 지방소멸위기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시설을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기지역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다.
- 제23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개발

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 멸위기지역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해당 지역 내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운영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역 내의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의료업의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소멸위험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 대사업을 할 수 있다.
- 제26조(마을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위기지역 주 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노인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하여 가정 방문을 통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마을주치의제도를 실시할 수 있

다.

- ② 제1항에 따른 마을주치의제도 실시를 위하여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마을주치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마을주치의제도의 실시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5장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 제2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방소멸 위기지역 발전사업의 시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정부의 보조금
  -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입금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제12조에 따른 활성화구역 지원
  - 2. 제13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지원
  - 3. 제26조에 따른 마을주치의제도 운영 지원
  - 4. 제2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9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협의하여 해당 기금을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